## [ ] 분리 교섭단위 [ ] 통합 결정 신청서

*    (	에는 해당되는	곳에 "√"	표시를 하기	바라며.	색상이 어두운	나은 신청인이	적지 :	않습니다.
--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

※ [ ]에근	애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아기 마다버, 색상이 어두운 단은	신성인이 찍지 않습니	<b>-</b> ↑.	(앞곡)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긴	는 30일
신청인	[ ] 노동조합 [ ] 사용	-자		
	조합명	조직형태		
			단위노조(기업, 지역, 전=	국). 여합단체.
			단위노조의 산하조직	17, 2 2 2 1,
노동	대표자	조합원 수	한지도오의 언어오락	
	"			
조합	조리 나무소 스케팅		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		)
		(팩스번호		)
	설립일	조직대상		
	사업장명	대표자		
	소재지			
사용자		(전화번호		)
	 전화번호	주된 업종		
	사업장 수	근로자 수		
 해당 사업(	장)의 모든 노동조합 수			
10 11	Э, 1 — Э — Д .			
시키 키기	미 이오(버리 지나 기노)	개		
신성 쉬시	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			
 「노동	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3제2항, [	'같은 법 시행령 제	제14조의11제1항 및 깉	 上은 법 시행
규칙 제1	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섭단위를 분	·리하거나 분리된	티 교선단위를 통합하는	- 결정을 신
청합니다	•			
			년 원	월 일
		신청인	(	서명 또는 인)
$\bigcirc\bigcirc$	<b>지방노동위원회</b> 귀하		(	716 TL U
	시 <b>앙 또 중 위 전 외</b> 게 하 			
첨부서류	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, 고용형태, 교섭 관행 등 교	섭단위를 분리 또는	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	수수료
	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		없음
※ 비고: 년	ェ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하기 바랍니다.			

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